

| 의안번호 | 제출일자 | 회부일자 | 상 정 내 역 | 심사결과 |
|------|-----------|-----------|---------------------------------|------|
| 78 | '95. 9. 6 | '95. 9. 7 |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 보 류 |
| | | |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 보 류 |
| 79 | '95. 9.12 | '95. 9.13 |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 보 류 |
| 80 | '95. 9.12 | '95. 9.13 |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 의 결 |
| 100 | '95. 9.29 | '95.10. 4 | 제8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3) | 보 류 |
| 154 | '95.10.10 | '95.10.11 |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 의 결 |
| 158 | '95.10.13 | '95.10.17 |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 의 결 |

2. 상정일자

- 도시계획국(총 19건)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 10.25) 상정, 심사
- 주택국(총 3건)
제8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10.23) 상정, 심사

3. 제안이유 및 요지

-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국장 최재범(도시계획국 소관 19건)
주택국장 양 감(주택국 소관 3건)

가. 제안이유

별첨내용

나. 주요요지

안전별내용 별첨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안전별내용 별첨

5. 심사결과

- 서울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 절차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 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이익에 관계되는 시설에 대한 9건에 대하여 시장 결정(지정)안대로 동의처리토록 하였고,
- 지역형편이나 도시계획시설 내용으로 보아 시장결정안에 특별히 의견이 있는 1건은 조건부 동의토록 하였으며,
- 12건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후 처리키로

하고 보류하였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
의견청취의건 안전별심사결과

시 결정(지정)안과 의견이 같음(9건)

| | |
|----------|----|
| 의안 번호 | 18 |
|----------|----|

1. 건 명 : 오류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2. 제안이유 : 오류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14-50번지 일대
 - 내 용
 - 면 적 : 12,888㎡(사유지 10,762㎡, 국·공유지 2,126㎡)
 - 건축물 : 78동(유허가 66동, 무허가 12동)
 - 가구수 : 226세대(가옥주 76, 세입자 150)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 주민동의율 : 토지 77%, 건물 82%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로구 오류동 14-50번지 일대 국·공유지 2,126㎡와 사유지 10,762㎡ 등 12,888㎡의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오류 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 예정구역 내에는 91필지의 사유지가 있

| | | | | | | | |
|--|----------|----|---|----------|----|----------|----|
| <p>고, 또 구역 내에는 78동의 주거용 건물이 있으나 평수가 적은 소꺾지가 대부분이고 지상건물도 10년 내지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건물의 밀집지역으로, 지역 내에는 226세대가 거주하고 있음.</p> <p>○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지역 내 차량통행이 어렵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별건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이 토지는 77%, 건물은 82.4%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p> <p>○이 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의사와 같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도록 동의의견임.</p> <p>5. 심사결과 시 지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30%;">의안 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59</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794, 산 3-1 ○내 용 · 면 적 : 1,621,000㎡→1,623,809㎡(증 2,809㎡) · 도시계획사항 : 자연녹지지역 · 공람공고중 의견접수 : 없음.</p> <p>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은 노원구 월계동 794와 산 3-1에 있는 기존 월계근린공원의 불합리한 공원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당초 공원면적 1,621,000㎡를 1,623,809㎡(증 2,809㎡)로 변경하고자 한 것이며, ○본 공원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공원과 인접된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학원을 설립하고자 학원 최소면적(6,600㎡)에 미달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에서 해제될 2,247㎡를 자연녹지지역에 포함시키고, ○대신 자연녹지 상단 계획도로 월편에 있</p> | 의안 번호 | 59 | <p>는 자연녹지 3,120㎡를 공원에 편입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공원 경계조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건은 현지확인후 처리의견임.</p> <p>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30%;">의안 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61</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위 치 : 마포구 합정동 414, 416 일대 ○내 용 ·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51,400㎡) ·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3,600㎡)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주민 의견청취 결과 : 없음.</p> <p>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본 마포구 합정동 414, 416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자치구 도시계획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의 일반주거지역 51,400㎡와 준주거지역 3,600㎡의 합정동 지구중심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 지역의 현황과 여건으로 보아 중심기능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보아 변경 결정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 일반상업지역 결정예정지 도면을 보면, 합정동 378-13 일대가 요철현상을 이루고 있어 인접 배후도로까지 상업지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현지확인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p> <p>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30%;">의안 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62</td> </tr> </table> | 의안 번호 | 61 | 의안 번호 | 62 |
| 의안 번호 | 59 | | | | | | |
| 의안 번호 | 61 | | | | | | |
| 의안 번호 | 62 | | | | | | |